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5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18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7. 7. 5.
판 결 선 고	2017. 8. 9.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3.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264,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5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7. 2. 10. 설립되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 및 별지 1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0. 1. 4. [redacted]시 C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800,000주 중 원고들의 소유주식 수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1. 9. 16. 이전에 548,932주(68.62%)였다가 2011. 9. 16. 558,932주(69.87%)로 변동되었고, 이후 2013. 5. 31. 562,156주(70.27%), 2013. 8. 2. 606,156주(75.77%), 2014. 12. 5. 610,156주(76.27%)로 각 변동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1. 13.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주식소유비율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증가하여 그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취득세 합계 1,161,360원, 농어촌 특별세 합계 103,580원(각 가산세 포함)을 원고들 지분별로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예외적으로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5

한 경우에만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부동산 취득 및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을 과점 주주들에게도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이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간주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5

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회사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피고는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취득세가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라는 점 등에 비추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일반적인 취득세 부과와 달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만 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5

별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비상장법인의 모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사실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필요한 정도 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법인이 최초로 납부한 취득세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한 취득세 부과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추구하는 공평과세 부과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이상의 과잉된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법익의 균형성도 만족하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김종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5

판사 임한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5

(별지 1)

선 정 자 목 록

1. A

2. D

3. E

4. F

5. G

6. H

7. I

8. J.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5

(별지 2)

주식회사 B 주식 등 변동 명세서

○ 발행주식총수 : 800,000주 (단위 : 주, %)

변동일 / 과점주주		2011. 9.15.이전		2011. 9. 16.			2013. 5. 31.			2013. 8. 2.			2014. 12. 5.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증 가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증 가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증 가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증 가 지분율
	본인	320,834	40.10	320,834	40.10	-	320,634	40.10	-	320,834	40.10	-	320,834	40.10	-
	처	103,467	12.94	103,467	12.94	-	103,467	12.94	-	103,467	12.94	-	103,467	12.94	-
	자	-	-	3,750	0.47	0.47	3,750	0.47	-	3,750	0.47	-	-	-	-0.47
	자부	17,664	2.21	17,664	2.21	-	20,888	2.61	0.40	42,888	5.36	2.75	50,638	6.33	0.97
	자	12,000	1.50	12,000	1.50	-	12,000	1.50	-	34,000	4.25	2.75	34,000	4.25	-
	동생	42,752	5.34	42,752	5.34	-	32,152	4.02	-1.32	32,152	4.02	-	32,152	4.02	-
	조카	24,832	3.10	24,832	3.10	-	24,832	3.10	-	24,832	3.10	-	24,832	3.10	-
	조카사위	27,383	3.43	33,633	4.21	0.78	44,233	5.53	1.32	44,233	5.53	-	44,233	5.53	-
계		548,932	68.62	559,932	69.87	1.25	562,156	70.27	0.40	606,156	75.77	5.50	610,156	76.27	0.50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5

(별지 3)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액 부과내역

(단위 : 원)

취득일	과세물건		과세표준 (장부가액× 취득지분)	취득세액 (가산세포함)	농어촌 특별세액 (가산세포함)	세액계	납세자별 부과세액	
	소재지	면적 (㎡)					성명	세액
2011.9.16.	[redacted] 시 [redacted] 외 3필지	8,370	5,896,860 (471,748,800 ×1.25%)	205,650	20,550	226,200		129,860 41,900 1,540 7,180 4,850 17,280 10,010 13,580
2013.5.31.	〃	〃	1,910,910 (477,727,700 ×0.4%)	59,490	5,180	64,670		36,940 11,930 460 2,410 1,360 3,670 2,830 5,070
2013.8.2.	〃	〃	26,866,262 (486,477,500 ×5.5%)	826,440	71,890	898,330		475,510 153,370 5,600 63,520 50,380 47,580 36,810 65,560
2014.12.5.	〃	〃	2,508,686 (501,737,300 ×0.5%)	69,780	5,960	75,740		39,840 12,870 - 6,310 4,240 3,970 3,050 5,460
계			37,182,718	1,161,360	103,580	1,264,9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5

(별지 4)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5조(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점주주가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5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05

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끝.